

A Study on the High School Library Personnel in Korea

韓國의 高等學校 圖書館職員에 관한 研究

李 弘 榮  
 <德壽商高教師>

編輯註：本稿는 1976年 9月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의 要約임.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學校圖書館에 藏書가 廣範圍하게 있고, 財政이 豊富하고, 施設이 아무리 좋아도 圖書館 職員의 數가 不足하거나 또는 圖書館人이 業務를 處理하는데 必要한 專門의 知識이 缺如 되었다면 學校圖書館은 그 學校에 있어서 중요한 教育的 影響力을 充分히 發揮할 수 없다. 그러므로 本研究는 文獻을 통하여 司書教師의 人事面과 이에 관한 本質的인 要素를 밝히고 이것을 土臺로 하여 現在 우리나라 高等學校 圖書館 職員들의 勤務現況을 分析하고 人事面에 있어서 問題點 및 改善策을 提示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本研究에서는 韓國의 高等學校 圖書館에서 勤務하는 職員들의 勤務現況에 대한 것 即 資質 및 資格, 奉仕活動, 處遇問題, 職務上의 問題등을 中心으로한 質問紙를 作成하여 學校圖書館 擔當者에게 보내어 記入케 함으로서 現況調査를 하고, 文獻을 통하여 理論的인 背景을 살피 司書教師의 本質的인 機能 및 問題點을 檢

討 하였다.

質問紙는 學生數 1,200名 이상되는 100個의 高等學校(公立 50學校, 私立 50學校)의 圖書館을 調査對象으로 郵送하였는 바 그 回收率은 다음과 같다. 設立別로 公立이 50部中 30部로 60%, 私立이 50部中 32部로 64%의 回收率을 나타내었으며, 地域別로 볼때 서울이 50部中 34部로 68%, 地方이 50部中 28部로 56%를 나타내었다.

II. 高等學校 圖書館 職員의 人事面에 관한 文獻 考察

1. 高等學校 圖書館 職員의 概念

學校圖書館에서 勤務하고 있는 職員의 類型을 보면 司書教師, 圖書館 擔當教師, 司書, 事務員등 4類型이 있다.

(1) 司書教師(Teacher-Librarian)

司書教師에 대한 定義를 해로오드(Harrod)의 「圖書館 用語 解說集」에서 찾아보면, 司書教師는 學校司書を 兼한 教師라고 하고 있으며, 植村長三郎編著 「圖書館學, 書誌學辭典」에서는 學校圖書館에 있으면서 教育科目을 담당하고, 또한 圖書館 業務를 맡고있는 教員이라고 定義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韓國圖書館協會編, 「圖書館 用語集」에서는 教師資格과 司書의 資格을 아울러 가진 者로서 學校圖書館을 管理, 運營하는 學校圖書館 職員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司書教師는 보통 一般教師가 學科目을 맡아봄과 동시에 圖書館 事務도 兼任하는 教師를 指稱한다.

司書教師는 一般教師들이 맡고있는 時間數의 절반 혹은 1/3의 時間數를 맡는 한편, 圖書館 業務에도 힘을 기울인다. 授業을 통하여 學生들과의 接觸이 빈번하고, 그들이 讀書에 대한 興味와 要求를 直接 把握할 수 있는 利點이 있으며 現在 우리나라 教育行政上가 장 알맞는 形態이다.

(2) 圖書館 擔當教師, 司書係 教師(Teacher as Lib-

<表 1> 調査對象者의 職位別現況

( )는 實數

職 位 別	설 립 별		계	지 역 별		계
	공립	사립		서울	지방	
사 서 교 사	53.4 (16)	31.2 (10)	41.9 (26)	44.2 (15)	39.8 (11)	41.9 (26)
담 당 교 사	33.3 (10)	21.8 (7)	27.5 (17)	17.6 (6)	39.3 (11)	27.4 (17)
사 서	10.0 (3)	31.2 (10)	20.9 (13)	23.5 (8)	17.8 (5)	20.9 (13)
사 무 원	3.3 (1)	15.8 (5)	9.7 (6)	14.7 (5)	3.6 (1)	9.8 (6)
계	100 (30)	100 (32)	100 (62)	100 (34)	100 (28)	100 (62)

rarian)

圖書館 擔當教師는 一般教師로서 正規授業을 다하면 學校의 事務分掌에 의거 圖書館 責任을 맡고 있는 教師를 말하며, 圖書館 司書로서 보다는 一般教師로서 的比重이 훨씬 더 큰 教師를 말한다. 圖書館 擔當教師는 過重한 授業과 圖書館學에 관한 知識의 不足 등으로 學校圖書館의 機能을 충분히 發揮하기 어렵다.

(3) 司書, 學校司書(School Librarian)

司書에 대한 定義를 보면, 植村三郎編著「圖書館學, 書誌學辭典」에 司書는 圖書 또는 圖書의 內容 및 圖書館의 管理方面에 勤務하는 職員이라고 했으며, 韓國圖書館協會編「圖書館 用語集」에는 圖書館學에 관한 一定한 教育과 訓練을 마치고 圖書 및 其他 資料의 整理保存, 閱覽에 관한 專門의 事務에 従事하는 圖書館 職員이라고 하였고, 申琦澈編「우리말 큰사전」에는 國公立 圖書館에서 圖書의 整理, 保存 및 閱覽을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定義하였다. 即, 司書는 圖書館學을 專攻한 사람으로서 圖書館 事務를 專擔하며, 學校의 一般教科目은 맡지 않은 사람을 말하나, 規模가 큰 學校에서는 이러한 專任 司書가 必要하다.

(4) 事務員

事務에 従事하는 사람이나 事務를 맡아보는 사람을 事務員이라 하는데, 助務員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圖書館 運營에는 事務的, 技術的인 면이 많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學校圖書館의 規模가 클수록 이 事務的인 면도 增加되며, 司書教師 한 사람으로서 圖書館 運營에 充實을 期하기 어렵게 된다. 事務職員은 이러한 事務的, 技術的인 면에서 司書教師를 도우며, 圖書館內의 諸般雜務를 處理 함으로서 司書教師는 보다 基本的인 圖書館 運營方針의 改善에 專念할 時間을 갖게 된다.

2. 各國의 司書教師 配置基準

(1) 韓國

學校圖書館 職員數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基準이 되는 것은 圖書館 奉仕 對象者의 數이다. 그래서 國內外의 基準을 보면 대개가 學生數의 多寡에 의하여 圖書館 職員의 數를 決定하고 있다. 우리나라 圖書館法 施行令 第6條를 보면 다음과 같이 圖書館職員 數를 指定하고 있다.

① 國民學校에는 1인 이상의 司書教師나 1인 이상의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둔다.

② 中學校와 高等學校에는 그 學生數가 1,200명 이하일 때는 1인의 司書教師나 1인의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를 둔다. 우리나라의 司書教師의 配置基準을 볼 때 學校圖書館에 專任 司書教師를 配置 할 수도 있고, 또 一般教師로서 圖書館의 專門的인 知識이 없어

도 擔當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配置基準의 實質的인 効力은 앞으로의 專任 司書教師의 配置를 目標로하는 年次的으로 司書教師의 國家의 養成計劃에 의한 教育이 實施되어 지는 데서만 可能한 것이며, 또 一般教師의 圖書館擔當을 위하여 教育大學, 師範大學 등에서도 學校圖書館 講座를 必須科目으로서 履修하게끔 하는 措置가 現在 보다는 새로운 方向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2) 美國

美國에서는 1945년에 國民學校와 中·高等學校에 通用되는 戰後의 學校圖書館 基準이 마련 되었으며, 이것은 1960년에 다음과 같은 基準으로 發展 되었다. ① 學生 900名까지는 學生 300名마다 司書教師 1名, 그 以上은 學生 400名 마다 司書教師 1名을 둔다. ② 事務員은 學生 600名 마다 1名을 둔다.

圖書館 主任이 視聽覺資料에 대해서 一部의 責任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圖書館 職員의 數는 25% 增加되고, 視聽覺資料와 視聽覺 教育計劃에 全般的인 責任을 가질 경우에는 50%增加한다고 되어 있다.

(3) 日本

日本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45年 以後 새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學校圖書館 問題가 크게 擡頭되었으며, 1949年頃 부터 學校圖書館 基準 財政問題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으며, 1953年 8月에는 法律第185號로서 “學校圖書館法”을 制定, 公布하기에 까지 이르렀고 1959年 改正發行된 文部省編 “學校圖書館 運營指針” 第2章에 실린 學校圖書館 職員의 基準은 다음과 같다.

① 學校圖書館에는 司書教師 및 事務職員을 둔다.

② 司書教師는 學生數 450名 미만의 學校에서는 兼任 1名을 두고, 450名 以上일 때는 專任 1名을 둔다.

③ 事務職員은 學生數 900名 미만의 學校에서는 專任을 1名, 1,800名 미만의 경우는 2名 그 以上의 경우는 3名을 둔다. 事務職員은 專門知識의 技術을 習得 하여야 한다.

④ 兼任 司書教師의 擔當 授業時間數는 週10時間 以下로 한다.

Ⅲ. 韓國의 高等學校 圖書館에 있어서 職員 現況

1) 圖書館 職員

우리나라 高等學校 圖書館數는 韓國 圖書館協會編 韓國 圖書館統計(1973年)에 의하면 696개의 圖書館이 있는데, 職員數는 司書教師(擔當教師도포함)가 559명 助務員이 449명이 있는데 1個 圖書館當 職員數는 1.4名이 되며, 司書教師(담당교사포함)는 0.8名, 助務員

은 0.65명이 된다. 本 調査對象이 62個 高等學校 圖書館의 職員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司書敎師, 擔當敎師

<表 2>와 같이 司書敎師가 全體 圖書館 職員의 27.1%, 擔當敎師가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司書敎師의 地域別分布를 볼때 서울이 32.7%, 地方이 22.5%로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司書敎師가 1個 高等學校 圖書館에 0.7人, 擔當敎師가 0.5人이 된다.

우리나라의 圖書館法 施行令 第6條의 配定 基準을 적용하면 124名이 되어야 하는데, 現在 64名으로서 48.4%(60명)가 不足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이 不足現狀을 設立別로 볼때 公立은 46.8% 私立은 50% 임으로 私立高等學校 圖書館이 더 不足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表 2> 調査對象高等學校 圖書館 職員 現況

( )는 實數

직 위 별	설 립 별			지 역 별		
	공립	사립	계	서울	지방	계
사 서 교 사	30 (18)	24.6 (17)	27.1 (35)	32.7 (19)	22.5 (16)	27.1 (35)
담 당 교 사	25 (15)	20.4 (14)	22.5 (29)	18.9 (11)	25.4 (28)	22.5 (29)
사 서	11.7 (7)	21.7 (15)	17.1 (22)	18.9 (11)	15.5 (11)	17.1 (22)
사 무 원	33.3 (20)	33.3 (23)	33.3 (43)	29.5 (17)	36.6 (26)	33.3 (43)
계	100 (60)	100 (69)	100 (129)	100 (58)	100 (71)	100 (129)

나) 司書, 事務員

<表 2>와 같이 司書, 事務員의 數는 圖書館 全體 職員의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設立別로 볼때 公立

이 45%, 私立이 55%로서 약간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1個 圖書館當 職員數를 보면 司書가 0.4人, 事務員은 現在圖書館 職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學校圖書館에서 採用할 法的根據가 없다. 그러나 學校圖書館의 業務는 多樣하고 利用者도 많으므로 司書敎師나 擔當敎師 한사람으로서는 圖書館運營에 充實을 期하기 어렵다.

事務職員은 事務的, 技術的인 면에서 司書敎師를 도우며, 圖書館內 諸般雜務를 處理하는데 必要하므로 正式으로 採用할 수 있는 法的根據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2) 資質 및 職務

가) 資 質

美國 圖書館協會에서 作成한 우수한 司書에게 必要한 資質 27가지를 土臺로 하여 不足된다고 생각되는 反應을 調査해본 結果 <表 3>과 같이 不足反應의 比率이 算出 되었다.

<표 3>을 보면 1位가 專門的인 知識(61.3%).

2位가 記憶力 (35.5%), 3位가 일에 대한 興味 및 迅速性(32.3%), 4位가 健康(30.6%), 5位가 適應力 (29%)등의 順位로 나타났다. 大部分의 圖書館職員들은 積極的인 면보다는 消極的인 面의 特性을 가지고 있으며, 圖書館 職員이 圖書館學에 대한 知識이 不足하다면 圖書館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수 없으므로 ूस으로 圖書館 職員의 資質向上을 위한 講習이 바람직하다.

<表 4>에서 圖書館 業務를 맡게된 動機를 살펴보면 自意가 35.4%, 他意가 27.4%를 나타내고 있으며, 司書敎師中 自意 52% 反面, 擔當敎師中 他意가 77.8% 임으로 司書敎師와 擔當敎師간에 큰差異가 있

<表 3>

圖書館職員 資質에 대한 不足反應

구 분	설 립 별			1항목당평균반응 %			구 분	설 립 별			1항목당평균반응 %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기 역 력	12	10	22	19.4	16.1	35.5	명 랑 성	6	2	8	9.7	3.2	12.9
상 상 력	10	4	14	16.1	6.5	22.6	지 도 력	7	8	15	11.3	12.9	24.2
판 단 력	7	5	12	11.3	8.1	19.4	근 면	5	3	8	8.1	4.8	12.9
진 문 적 지 식	17	21	38	27.4	33.9	61.3	인 내 력	7	1	8	11.3	1.6	12.9
정 확 성	9	6	15	14.5	9.7	24.2	지 적 인 호 기 심	5	4	9	8.1	6.5	14.5
신 속 성	14	6	20	22.6	9.7	32.3	건 전 의 강	12	7	19	19.4	11.3	30.1
적 응 력	12	6	18	19.4	9.7	29	예 의 의	3	1	4	4.8	1.6	6.5
주 의 력	9	6	15	14.5	9.7	24.2	인 간 에 의 흥 미	3	3	6	4.8	4.8	9.6
일 에 대 한 흥 미	12	8	20	19.4	12.9	32.3	독 서 의 욕	5	11	16	8.1	17.7	25.8
정 리 정 돈	6	4	10	9.7	6.5	16.1	안 정 성	5	6	11	8.1	9.7	17.7
수 완	6	2	8	9.7	3.2	12.9	총 명	4	5	9	6.5	8.1	14.5
조 직 적 인 사 고 력	7	8	15	11.3	12.9	24.2	신 퇴 성	2	3	5	3.2	4.8	8.1
박 조 력	5	4	9	8.1	6.5	14.5	응 통 성	10	7	17	16.1	11.3	27.4
협 조 성	4	2	6	6.5	3.2	9.7							

<表 4> 圖書館業務를 맡게된 動機

문항별	직위별		사서교사		담당교사		사서		사무원		계	
	N	%	N	%	N	%	N	%	N	%	N	%
상부의 지시	6	24	14	77.8	2	15.4	1	16.7	23	37.1		
새로운 분야이고 성장을 기할수 있기에	7	28			2	15.4			9	14.5		
적성에 맞기 때문에	6	24	3	16.7	2	15.4	2	33.3	13	20.9		
기타	6	24	1	5.5	7	53.8	3	50	17	27.4		
계	25	100	18	99.9	13	100	6	99.9	62	99.9		

<表 5> 職位別 勤務時間

시간수	직위별		사서교사		담당교사		사서		사무원		계	
	N	%	N	%	N	%	N	%	N	%	N	%
8시간 이하	2	7.7	2	11.8					4	6.5		
8시간	3	11.5	1	5.9			1	7.7	1	16.7	6	9.6
9시간	9	34.6	4	23.5			4	30.8	1	16.7	18	29
10시간	4	15.4	6	35.3			4	30.8	3	50	17	27.4
11시간	2	7.7	1	5.9			2	15.4			5	8.1
11시간 이상	6	23	3	17.6			2	15.4	1	16.7	12	19.3
계	26	99.9	17	99.9			13	100	6	100.1	62	99.9

<表 6> 平日 退勤時間

시간수	직위별		사서교사		담당교사		사서		사무원		계	
	N	%	N	%	N	%	N	%	N	%	N	%
5시	1	3.8	1	5.9							2	3.2
6시	4	15.4	8	47			3	23.1	2	33.3	17	27.4
7시	13	50	7	41.1			7	53.8			27	43.5
8시	3	11.5	1	5.9					1	16.7	5	8.1
9시	1	3.8					3	23.1			4	6.4
10시	3	11.5							2	33.3	5	8.1
10시 이후	1	3.8							1	16.7	2	3.2
계	26	99.9	13	100					6	99.8	62	99.9

음을 알수 있다.

나. 勤務時間

<表 5>를 보면 平日에 10時間 以上 勤務하는 職員이 54.8%인데 職位別로 보면 事務員(66.7%), 司書(61.6%), 擔當教師(58.8%), 司書教師(46.1%)의 順位로 되어 있으며, 11時間 以上 勤務하는 職員이 27.4%를 나타내고 있으니 半數 以上은 勤務基準時間을 超過하여 勤務하고 있는 實情이다.

<表 6>과 같이 圖書館 職員의 退勤時間을 보면 오후 7時(43.5%), 오후 6時(27.4%) 오후 8時, 10時(8.1%) 오후 9時(6.4%) 順位로 되어 있으며, 오후 10時 이후 退勤者가 11.3%인데, 職位別로 보면 司書教師가 15.3%, 事務員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3. 處遇 및 隘路點

가) 待遇

<表 7>과 같이 圖書館 職員의 報酬를 살펴보면, 月 10萬원 이상이 司書教師(85.5%), 擔當教師(94.2%), 司書(23.6%), 事務員(16.6%)의 分布를 나타내고 있으며, 月 6萬원 이하는 司書(46.2%), 事務員(66.6%)를 차지 함으로 司書教師와 司書間의 큰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報酬에 대한 滿足度를 살펴보면 <表 8>과 같이 「매우 不滿이다」가 司書(30.8%), 事務員(16.7%), 司書教師(11.5%) 順位로 되어있는 反面에 「약간 不滿이다」는 擔當教師(58.8%), 事務員(33.3%), 司書, 司書教師(23.1%) 順位로 되어 있으며, 全體的으로 43.8%가 報酬에 不滿을 表示하고 있다.

나) 隘路點

圖書館 職員의 勤務中 隘路事項을 살펴보면 <表 9>와 같이 1位가 行方不明된 圖書處理(74.2%), 2位가

〈表 7〉 報 酬 現 況

금 액	직위별		사서교사		담당교사		사 서		사 무 원		계	
	N	%	N	%	N	%	N	%	N	%	N	%
4만원이하							1	7.7	1	16.6	2	3.3
4~6만원							5	38.5	3	50.2	8	12.9
7~9만원	3	11.5	1	5.8	4	30.8	1	16.6	1	16.6	9	14.5
10~12만원	11	42.3	8	47.1	1	7.7	1	16.6	1	16.6	21	33.9
13만원이상	12	46.2	8	47.1	2	15.9					22	35.5
계	26	100	17	100	13	100			6	100	62	100

〈表 8〉 報 酬에 對한 滿 足 度

문항별	직위별		사서교사		담당교사		사 서		사 무 원		계	
	N	%	N	%	N	%	N	%	N	%	N	%
만족하다	5	19.2	1	5.9	2	15.4	1	16.7	9	14.5		
그저그렇다	12	46.2	6	35.3	4	30.8	2	33.3	24	38.7		
약간불만이다	6	23.2	10	58.8	3	23.1	2	33.3	21	33.9		
매우불만이다	3	11.5	4	30.7	1	16.7	8	12.9	26	100		
계			17	100	13	100	6	100	62	100		

圖書館 認識不足(51.6%), 3위가 職員不足 및 資料不足(30.6%), 4위가 勤務時間(29%) 順位로 나타나고 있으며, 設立別로 볼때 行方不明된 圖書, 認識不足, 職員 및 資料不足은 서로 共通의인 隘路點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勤務時間은 公立이 19.4%, 私立이 9.7%로서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表 9〉 圖書館職員의 隘路事項反應

구 분	설립별			반 응 수			1항목당, 평균반응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근 무 시 간	12	6	18	19.4	9.7	29.1			
인 식 부 족	15	17	32	24.2	27.4	51.6			
보 수	4	4	8	6.5	6.4	12.9			
좌 석 부 족	10	7	17	16.1	11.3	27.4			
직 원 부 족	9	10	19	14.5	16.1	30.6			
고 독	2	8	10	3.2	12.9	16.1			
도 서 분 류	6	5	11	9.7	8.1	17.8			
도 서 구 입	7	8	15	11.3	12.9	24.2			
교 사 와 접 촉		6	6		9.7	9.7			
자 료 부 족	11	8	19	17.7	12.9	30.6			
문 제 학 생	3	3	6	4.8	4.8	9.6			
야 간 근 무	5	4	9	8.1	6.5	14.6			
승 진 기 회	3	6	9	4.8	9.7	14.5			
시 설	3	7	10	4.8	11.3	16.1			
적 성		4	4		6.5	6.5			
행 방 불 명 된 도서	25	21	46	40.3	33.9	74.2			

圖書館 職員이 是正을 바라고 있는 事項을 살펴보면 〈表 10〉과 같이 1위가 施設改善(35.5%) 2위가 圖書館 行政改善(32.2%), 3위가 職員의 法的地位(25.8%), 4위가 昇進機會(24.2%) 順位로 나타났는데, 設立別로

分析해볼때 施設改善은 公立이 12.9%, 私立이 22.6%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反面에 圖書館 行政改善, 職員의 法的地位, 昇進機會등은 비슷한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表 10〉 是正을 要하는 事項에 對한 反應

문항별	설립별	반 응 수			1항목당 평균반응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근 무 시 간		2	13	15	3.2	20.8	24
보 수		5	4	9	8.1	6.5	14.6
좌 석 부 족		1	10	11	1.6	16.1	17.7
직 원 부 족		4	5	6	6.5	8.1	14.6
도 서 구 입		4	5	9	6.5	8.1	14.6
자 료 부 족		1	7	8	1.6	11.3	12.9
특 별 수 당		6	6	12	9.7	9.7	19.4
승 진 기 회		7	8	15	11.3	12.9	24.2
시 설 개 선		8	14	22	12.9	22.6	35.5
휴 가		1	1	2	1.6	1.6	3.2
직 원의 법적 지위		8	8	16	12.9	12.9	25.8
연 수 관 동 및 장		3	3	6	4.8	4.8	9.6
도서 관 행정 개 선		10	10	20	16.1	16.1	32.2

IV. 問題點의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 高等學校 圖書館의 歷史는 그리 오래되지 않지만 高等學校 教育에 있어서 學校圖書館이 차지하는 位置가 날로 중요시 되어, 現在 696個 高等學校 圖書館에서 1008名의 圖書館 職員이 勤務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理論의인 側面에서 要求하는 學校圖書館과 現在 韓國의 高等學校 圖書館 職員들의 要求狀況과는 심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에 調査結果 나타난 問題點을 列舉하고, 그 改善策을 言及함으로 結論을 지을까 한다.

첫째, 圖書館法 施行令에 明示된 學校圖書館 職員의 配置基準에 비해 1976年 7月 現在 司書教師와 擔當教師가 48.4%나 不足하다.

둘째, 學校圖書館의 司書 및 事務職은 採用時 法的 根據가 없으며, 報酬가 一般의으로 낮다.

셋째, 藏書點檢 結果 行方不明된 圖書處理에 苦悶(74.2%)을 하고 있다.

네째, 擔當教師(17.6%)는 圖書館學 知識不足으로 圖書分類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擔當教師(94.1%) 및 司書教師(34.6%)가 一週當 18時間 이상 授業을 맡고 있다.

여섯째, 圖書館 職員中 54.8%가 平日에 10時間 이상 勤務를 하고 있다.

일곱째, 圖書館 職員中 67.7%가 昇進機會가 막혀 있다.

여덟째, 圖書館 職員과 教師間的 紐帶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8가지의 問題點이 있는데 이에 대한 改善策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圖書館法 施行令에 規定된 司書教師를 配定 하는 일

우리나라 圖書館法 第26條에 의하면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에는 司書教師 또는 司書의 業務를 擔當할 教師를 두며, 그 學生數가 1200名을 超過할 때는 2名의 司書教師나 司書의 業務를 擔當할 教師를 둔다” 라고 規定되어 있다. 이와같이 法令이 엄연히 存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現在 48.4%의 職員이 不足現象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行政當局은 圖書館法 施行令에 規定한 司書教師를 年次的으로 配置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學校圖書館 事務職의 法的根據를 마련하는 일

學校圖書館의 規模가 크면은 事務的 技術的인 일이 많아지므로 司書教師 한 사람의 힘으로는 擔當할 수 없게 된다. 學校 自體에서는 事務職을 採用하여 配置시키고 있으나 報酬, 職務上의 問題點이 많다. 그러므로 圖書館法 施行令의 職員配定 基準을 事務職員이 正式으로 配置될 수 있도록 改正하여야 한다.

3) 資料 除籍에 대한 일

紛失圖書, 行方不明圖書, 廢業圖書 등이 除籍할 圖書로 決定되면 除籍明細書를 作成하여 學校長의 決裁를 받아 圖書臺帳에서 記載事項을 末消하고 除籍簿에 記載 해둠으로서 인계든지 對照해 볼 수 있도록 處理하여 끝내 버린다.

4) 擔當教師의 圖書館 業務處理에 관한 일

圖書館 擔當教師는 一般教師로서 正規授業(1週當 22時間)을 다 하면서 事務分掌上 圖書館 運營을 責任받고 있으므로 강한 意欲을 가지고 奉仕活動을 하기 어렵고 동시에 圖書分類도 形式的으로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圖書館法 施行令 第6條의 “司書의 職務를 擔當할 教師”라는 字句가 해당 法規에서 削除되어야 하며, 學校圖書館에는 司書教師만이 實務責任을 갖고 積極的으로 奉仕할 수 있도록 改正되어야 한다.

5) 授業 時間數에 대한 일

學校圖書館의 業務는 多樣하고 廣範圍 하므로 司書教師나 擔當教師가 正規授業을 하면서 圖書館을 運營한다면 學校圖書館은 圖書館다운 일을 遂行 못하고 圖書 保管所로 轉落되고 만다. 그러므로 圖書館 運營이 正常的으로 이루어 지려면 1週當 10時間 이내의 授業時間을 賦課하는 法規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6) 勤務時間에 대한 일

人間的 體力은 限界가 있으므로 每日 10時間 以上 勞動을 하면 健康을 해칠 우려도 있고 勤務姿勢가 解弛되기 쉽다. 또한 圖書館 業務는 變化없는 단조로운 일이기엔 쉽게 지루한 감을 갖게 되며, 勤務意欲을 喪失하기 쉬우므로 超過勤務時間은 手當을 支給하는 方案을 講究하여야 한다.

7. 司書教師의 昇進機會에 대한 일 司書教師는 特殊教師의 系列에 속하여 昇進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點인데, 現行法에서는 司書教師는 一般教師의 資格과 司書의 資格을 아울러 가져야 하는 것으로 一般教

師보다도 더 高等의 資格基準을 要求하고 있으면서 司書教師로 任命되면 下落인 特殊教師의 系列에 속하며, 校監, 校長으로 昇進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이와같은 法規上의 矛盾으로는 司書教師의 士氣(Morale)가 큰 問題이므로 職制를 體系化하여 一般教師와 똑 같이 昇進할 수 있는 法的措置를 講究해야 할 것이다.

8) 司書教師와 教師間的 接觸에 대한 일

司書教師는 教師에게 學習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는 것이 중요한 業務이다. 그러므로 항시 다음과 같은 면에서 教師와 意見을 交換하고 接觸 하여야 한다.

가) 圖書 選擇 과정에서 教師들과 司書間에 일상적인 文書交換이나 對話를 계속 維持하여야 한다.

나) 學生과 教師들이 圖書館 利用에 있어서 不便한 點, 問題點등을 解決하기 위하여 수시로 或은 定期的으로 協議할 必要가 있다.

다) 學生들의 宿題에 관해서도 教師와 事前에 協議하여 적당한 參考資料를 準備하도록 힘써야 한다.

(參考 文獻)

- 金京一 學校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서울: 현대교육출판사, 1971.
- 金京一 “學校圖書館의 現實과 오늘의 問題點” 교육경론, 132: 27, 1967. 10.
- 金基泰 “學校圖書館 運營의 理論과 實際교단. 41: 242, 1970 5.
- 金斗弘 “圖書館法의 問題點” 도협월보, 1973. 1.
- 金斗弘 “學校圖書館 行政의 問題點에 관한 考察”, 도협월보 11: 19 1970. 2.
- 金世翹 “學校圖書館 運營에 對한 考察” 새교육. 17: 10 1965. 10.
- 金容佰 “司書職의 人事管理” 도협월보, 1967. 3.
- 金宗西 現場研究法의 理論과 實際, 서울, 배영사, 1968.
- 金重漢 學校圖書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8.
- 釜山市教育研究編, 釜山市 各級 學校圖書館 實態調查 報告書, 1964.
- 李孝媛 韓國의 大學圖書館 參考可書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3)
- 張一巴 學校圖書館의 運營指針. 서울: 신서각, 1966.
- 趙載厚 “學校圖書館 育成을 위한 教育政策 改善의 必要性” 도협월보, 6: 4 1965. 5.
- 晉倫鉉 現代 人事管理論. 서울: 진명문화사, 1973.
- 崔根滿 “우리나라 學校圖書館 現況과 進路” 국회도서관보, 14: 52, 1965. 7.
- 玄源明 “司書教師의 問題點” 도협월보, 14: 10 1973. 10.
- 日本文部省編, 學校圖書館 運營指針, 東京: 明治圖書, 1959.
- 日本學校圖書館 協議會編, 學校圖書館, 135: 42 1962.
- 全國學校圖書館 協議會編 美國의 學校圖書館 基準. 東京: 同會 1962.
- America Library Association *Standard for School Library Programs* A.L.A., 1960.
- Lucile F. Fargo *The Library in the school* A.L.A., 1947.
- L.H. Harrod *The Librarians' Glossary* London: 1971
- M.P. Douglas. *The Teacher Librarian's Hand-book* Chicago: A.L.A., 1949.
-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Elementary School Libraries Today*. Washington: N.E.A., 1951.
- Wofford, Azile. *The School Library at Work* New York: Wilson, 1959.